

## 취수해역 지정신청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	처리기간 60일
신청인	기관명		
	주소  (전화번호: )		
신청해역	정점 좌표		
	반지름	km	수심  m
취수목적			
취수 계획량	톤/일		

「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   월    일

신청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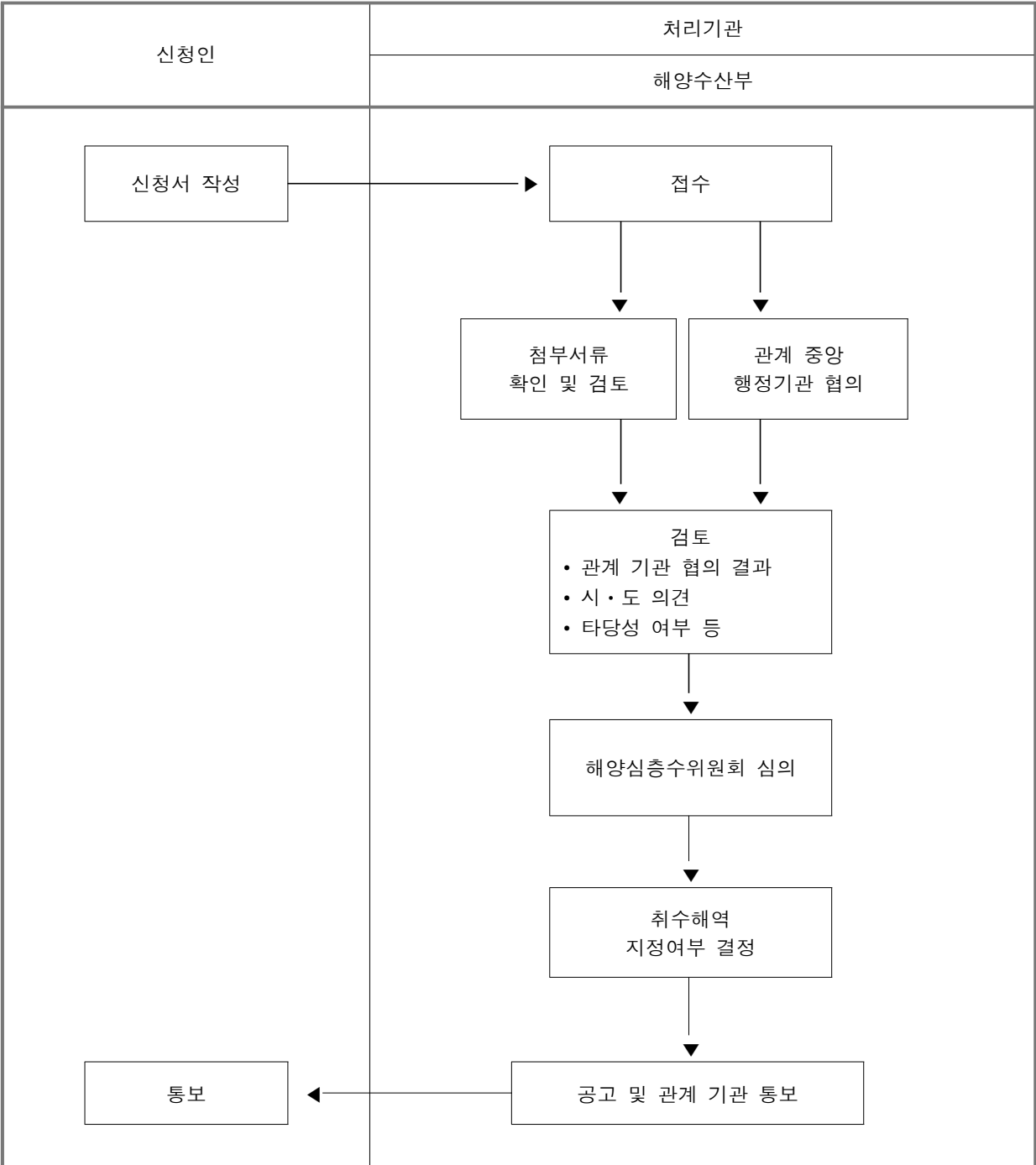
(서명 또는 인)

**해양수산부장관**    귀하

첨부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취수해역 운영계획서(1일 취수 예상량과 취수해역의 보전 및 사후관리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)</li> <li>2. 정점 좌표와 반지름이 표시된 도면(수심과 등심선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의 도면에 표시해야 합니다)</li> <li>3. 관련된 어업권, 광업권 등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                    가. 보상계획서(권리의 내용과 권리자 현황, 손실의 내용, 보상의 주체와 시기, 방법, 그 밖에 권리자의 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)                      나. 권리자 동의서</li> <li>4. 취수해역 수질검사서(「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)</li> </ol>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처리기간산정

1. 서류 검토: 10일
2. 관계 기관 협의: 20일
3. 해양심층수위원회 심의: 20일
4. 공고·통보: 10일